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7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송옥주·정성호·이병진

한정애・박 정・박홍근

부승찬 • 이수진 • 박해철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마련"을 "마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법원은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9개월"을 "12개월"로,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5조"를 "제5조제2항"으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를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u>마련</u>)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u>마련</u>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u><u><u></u><u><u>o</u></u>) <u>(1)</u></u></u>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	
인을 <u>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u>	3년마다 마련하여야 한다.
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가이
	드라인을 기초로 법원은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
	도록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여
	<u>야 한다.</u>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3
지원의 지급기간은 <u>9개월</u> 을 넘	<u>12개월</u>
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u>3개월</u> 의 범위에서	<u>6개월</u>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	4
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	
원 금액은 <u>제5조</u> 에 따른 <u>양육</u>	<u>제5조제2항</u> <u>양육</u>

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	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u>정한다</u>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